

장성군의회 공고 제2019-24호

##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
장성군의회 오원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 공고함.

1. 집회일시 : 2019. 10. 18.(금) 10:30
2. 집회장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주요안건

가. 조례안 등

나.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

2019. 10. 14.

장성군의회 의장 차 상 현

